##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34 발의연월일: 2020. 9. 2.

발 의 자: 박주민・야전비・이성만

김민철 · 임종성 · 오영환

전혜숙 · 김승원 · 이재정

이탄희 · 김홍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에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약80%가 친권자(친·양부모 등 포함)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재범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함에 있어서 폭력적인 체벌이 허용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이에,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자녀를 비폭력적으로 훈계하여야만 하고, 자녀에게 비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안 제913조).

법률 제 호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3조(친권자와 자녀의 권리 및 의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및 의무가 있고, 자녀는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第913條(保護, 教養의 權利義務) | 제913조(친권자와 자녀의 권리  |
| 親權者는 子를 保護하고 敎養     | 및 의무) 친권자는 자녀를 보   |
| 할 權利義務가 있다.         | 호하고 교양할 권리 및 의무가   |
|                     | 있고, 자녀는 비폭력적 양육을   |
|                     | <u>받을 권리가 있다</u> . |